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외 게임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어 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조치 필요성이 제기된바,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여 보고의 이행, 게임물 표시의무의 이행 등을 대리하도록 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 행위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여할 게임배급·제공업자의 매출액, 이용자 수 등 기준을 마련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 여부 확인 권한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위탁(안 제18조의3 및 제23조제1항제6호)

나.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의 운영기관, 업무범위 등 운영 방안 마련(안 제19조의3)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실시 예정

3) 행정규제: 협의 예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을 제18조의4로 하고, 제1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인 자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제공 형태가 다양한 게임물의 경우 이를 합산한다)
3. 그 밖에 게임이용자에게 현저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피해구제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른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이하 “피해구제센터”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 등에 따른 게임 이용 피해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담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의 의견 청취
3. 피해구제 방안 강구 및 법률적 지원
4.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5. 피해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한 국내외 제도조사
6. 피해 예방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피해구제센터 운영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31조의2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제18조의4 및 제23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3(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 ① 법 제31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게임물 관련사업자와 중개계약을 맺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게임물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제외한다.</u> 1. <u>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前)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자</u> 2. <u>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게임물을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제공 형태가 다양한 게임물의 경우 이</u>

제18조의3(게임머니 등) (생략)

<신설>

를 합산한다)

3. 그 밖에 게임이용자에게 현재
한 피해를 입히는 사건·사고
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
성이 있는 경우로서 국내대리
인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
업연도를 말한다) 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을 기준으로 한다.

제18조의4(게임머니 등) (현행 18
조의3과 같음)

제19조의3(피해구제센터의 운영 등)

① 법 제33조의2 제5항에 따른 게
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
하기 위한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
(이하 “피해구제센터”라 한다)는
법 제16조에 따른 게임물관리위

원회가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행위 등에 따른 게임 이용 피해와 관련한 신고의 접수·상
답
2. 사실의 조사·확인 및 관계자
의 의견 청취
3. 피해구제 방안 강구 및 법률
적 지원
4. 피해구제 관련 국내외 협력체
계 구축·교류
5. 피해 실태 및 권익보호를 위
한 국내외 제도조사
6. 피해 예방을 위한 게임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게임물 이용자의 피
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
요한 업무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1 ~ 5. (생략) <u><신설></u>	③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피해구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④ <u>게임물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피해구제센터 운영 규정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제23조(권한의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31조의2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의무 위반 여부 확인 업무</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연 락 처	(044) 203 - 2444